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7.9.4.(월) 조간	배포	2017.9.1.(금)

책 임 자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주 홍 민(02-2100-2970) 금융위 FIU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(02-2100-1730)	담 당 자	김 민 하 사무관 (02-2100-2972) 이 영 민 사무관 (02-2100-1722)
	국조실 금융정책과장 이 동 엽(044-200-2190)		김 정 훈 서기관 (044-200-2191)
	기재부 외환제도과장 이 형 렬(044-215-4750)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송 진 혁(044-215-4230)		유 예 림 사무관 (044-215-4751) 조 윤 석 사무관 (044-215-4232)
	공정위 특수거래과장 한 경 종(044-200-4430)		정 은 애 사무관 (044-200-4438)
	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 성 훈(02-2110-3167)		김 봉 진 검사 (02-2110-3759)
	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천 지 현(02-2110-1567)		황 선 철 사무관 (02-2110-1525)
	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한 경 수(044-204-3202)		김 필 식 사무관 (044-204-3222)
	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장 우 성(02-3150-1605)		김 상 순 팀장 (02-3150-0252)
	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차 현 진(02-750-6615)		김 정 규 팀장 (02-750-6639)
	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최 성 일(02-3145-7420)		김 용 태 팀장 (02-3145-7425)
	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대응센터장 김 주 영(061-820-1830)		윤 석 웅 팀장 (02-405-5563)

제목 : 「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」 개최 –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

◈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「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」를 개최

◈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가능한 조치 신속 추진,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규제 신설

< 거래투명성 확보,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>

✓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,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,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자율규제 권고

✓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, '가상통화거래행위'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

<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>

✓ 「가상통화 합동단속반」 구성 등 범죄 단속·처벌 강화

✓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·제재,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 구축

1. 회의개요

□ 금일 '17.9.1.(금) 10:30 **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** 주재로 「**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**」 회의를 개최

○ **일 시** : '17.9.1.(금) 10:30

○ **장 소** :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

○ **참 석**

- **(금융위)** 부위원장(주재), 금융서비스국장, FIU기획행정실장, 전금과장
- **(관계기관)** 국조실, 기재부, 공정위, 법무부, 방통위, 국세청, 경찰청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국인터넷진흥원

2. 주요내용

< 추진 배경 >

□ **김용범 부위원장**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**가상통화 거래규모**가 **크게 증가**하고 **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**하는 등 **시장이 과열**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,

○ 가상통화를 악용한 **불법거래**,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**유사수신·다단계** 등 **사기범죄** 발생으로 **소비자 피해**가 우려됨을 언급

○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**화폐·통화**나 **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**,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**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**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**세심한 대응**이 필요함을 강조함

○ 아울러, 금일 관계기관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**대응방안**이 **차질 없이 이행**될 수 있도록 **긴밀한 공조와 협력**을 당부하였음

< 주요 대응방향 >

❶ 거래투명성 확보,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

□ **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**에서 **실행가능한 방안**으로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**이용자 본인확인**을 강화하고,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**은행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**할 예정

○ 아울러, **소액해외송금업자**가 **가상통화**를 **해외송금의 매개수단**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**모니터링을 강화**하고, **거래투명성도 확보**해나갈 계획

○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**의심거래보고**(특정금융정보법), **실명확인**(금융실명법) 규제를 적용('17.7월)하는 만큼,

- 가상통화의 **국내거래**에 대해서도 **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추세** 등을 감안하여 **규제도입**을 추진할 계획(특금법 개정)

○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**고객자산의 별도 예치** 등 **소비자보호**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**자율규제안**에 반영토록 권고 추진

□ 나아가 **건전한 거래질서 확립**을 위해 **법·제도도 정비**해나갈 계획

○ 가상통화 **투자를 사칭**한 **유사수신행위**에 대해 **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 근거**를 **명확화**하고, **처벌 수준을 강화**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

○ 한편,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·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**가상통화거래**를 **금융업으로 포섭**하여 **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,**

- **유사수신행위규제법**의 **적용범위를 확대**하여,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**'가상통화거래행위'**에 대해서도 **규율체계를 마련**할 예정
(가칭 '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')

○ 또한, 지분증권·채무증권 등 **증권발행 형식**으로 **가상통화를 이용**하여 **자금조달**(ICO)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**자본시장법 위반**으로 처벌

❷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

□ **소비자 피해방지**를 위해 **범죄·불법행위**에 대해서는 **관계기관이 합동**으로 **단호히 대응**

○ **유사수신·다단계** 등 **사기범죄**는 「**합동단속반**」을 **구성**하여 **집중단속기간** 동안(~'17년말) **단속을 실시**하는 등 **범죄 단속** 및 **처벌**을 강화할 예정

○ 해킹 등에 따른 **고객정보 유출사고**를 **철저히 조사**하고, **법 위반사항**에 대해서는 **엄정하게 제재**할 계획

○ 아울러, **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**을 조사하고, **공정위·검찰·경찰·국세청**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**공동점검체계**도 구축할 예정

❸ 규제·감독 문제 검토

□ **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**이나 **인가** 문제, **과세** 문제 등 **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**에 대해서는

○ 각국 정부, 국제기구 등의 논의·규제 동향을 보면서 **면밀히 분석**하고 **충분한 논의**를 통해 **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**

3. 향후일정

□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**분기별로 개최**('17.9월, '17.12월)하고,

○ **관계기관 실⊠점검⊠의**(⊠⊠⊠ ⊠⊠위 ⊠⊠⊠⊠⊠⊠⊠)를 ⊠⊠ ⊠⊠하여 **기관별 이행상황**을 **점검**할 계획

⊠ ⊠⊠⊠ ⊠⊠⊠⊠ ⊠⊠ ⊠ ⊠⊠⊠⊠⊠⊠⊠⊠⊠ ⊠⊠⊠
⊠⊠⊠ ⊠⊠⊠⊠ ⊠⊠ ⊠⊠⊠⊠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별첨2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

1 매우 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

○ **가상통화는** 그 **가치가 수요·공급에 따라 변동**하며, 정부·금융기관 등이 **가치를 보장하지 않음**

- 또한, **불확실한 가치** 등으로 **가격 적정성 여부**를 **판단할 수 없음**

○ **가격 급변동**으로 인한 **손실발생** 가능성이 ⊠우 커 본인의 책임하에 **거래시 신중한 판단**이 요구됨

2 유사수신·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주의

○ ⊠근 **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 제공**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**유사수신·다단계** 등 **사기**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

○ 비트코인 등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**블록체인 기술**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**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**하는 반면,

- **다단계 유사코인**의 경우 **소스코드**를 **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** 경우가 대부분임

○ **고수익을 약속**하며 시중에서 **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**를 판⊠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이며, **후원수당을 지급**하며 **다단계 조직**을 이용하여 **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**이므로 주의가 요망됨

* 수원지방검찰청 배포 보도자료 참조('16.6.20일, '16.7.27일, '17.6.22일)

3 해킹 및 암호키(Private Key) 유실 위험에 노출

○ 이용자가 가상통화를 **직접 보관**하거나 **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**하는 경우에도 **가상통화 보관지갑 해킹**으로 **이용자 자산이 탈취**될 위험이 존재함

○ 또한,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**암호키(Private Key)가 유실**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**이용자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**